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“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건축물 을 말한다. 1.~4.(생 략) ②(생 략)	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“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 함은 1.~4.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
제21조(과세표준) ①(생 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 다.	제21조(과세표준) ①(현행과 같음) ②시가표준액..... ...
제28조(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) 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. 1.~4.(생 략) ②(생 략)	제28조(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) ①법 제266조 제3항에서 “그 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”이라 함은 1.~4.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심사보고서

1996. 7. 11.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1996년 6월 13일
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:1996년 6월 14일

다. 상정일자:제3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
(’96. 7. 11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제안설명자:부과과장 김재형

가. 개정이유

○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대상중 공동주
택의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
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
확대하는 등 구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
을 보완하고자 함

나. 주요개정골자

○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

감면대상중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공동
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
설 및 복리시설로 구분확대하여 명확히 규
정함(안 제12조제1항)

○전용면적 40m²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의
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을 공동주택
및 그 부속토지로 하되, 공동주택의 입주자
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
설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
여 규정함(안 제12조제2항)

○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
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
294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율이 높은 것
하나만 적용하는 규정 신설(안 제1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
○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과세면제, 불
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
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
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된 바,

○동 개정조례안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
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5세대 이상의
공동주택과 전용면적 40m² 이하로 영구임대

주택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구분, 확대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고,

○안 제18조의 내용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중복감면을 방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음.

○이와 같은 등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'96. 3. 21.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- 5. 토론요지: 없음
- 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8. 기타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84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: 1996. 6. 13.
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대상 중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구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개정골자

○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중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분확대하여 명확히 규정함(안 제12조제1항).

○전용면적 40m²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을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하되,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(안 제21조제2항).

○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규정신설(안 제18조)

3. 개정근거

○지방세법(1995. 12. 6. 법률 제4995호) 제9조

4. 개정조례(안): 별첨

5. 예산조치필요성: 불필요

붙임: 1.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2. 신·구조문대비표

첨부: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호 본문중 “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”를 “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m²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(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.

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중복감면의 배제)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